

2026년 객관식세법(1쇄) 국세기본법 수정사항

1. 5-30 10번 문제 2번 보기 수정

- 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·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.

2. 5-37 정답 수정

10 ~~㉠~~ ㉢

3. 5-38 해설 수정

- 09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자동확정 대상이 아니며, 중간예납하는 법인세(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·결정하는 경우는 제외)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.
- 10 ①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이지만,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각각 별도의 성립시기를 정하고 있다.
② 신고납세제도 국세의 수정신고(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)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.
④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·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체적기간은 15년이다.
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·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4. 5-69 2번 문제 4번 보기 수정

- ④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,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의 결과 통지의무가 없다.

5. 5-75 15번 문제 5번 보기 수정

- ⑤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%를 감면한다.

6. 5-75 16번 문제 5번 보기 수정

- ⑤ 납세자의 착오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그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.

7. 5-81 15번 해설 수정

- ⑤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8. 5-98 8번 문제 3번 보기 수정

- ③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, 해당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세무서장은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9. 5-105 8번 해설 수정

- ③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, 해당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지라도 세무서장은 과세예고 통지 의무가 없다.